



통지번호	CP299
과세 연도	2005년 12월 31일
통지 일자	2009년 3월 2일
고용주 ID 번호	[Redacted]
연락처	전화 [Redacted]
페이지 1 / 2	

Form 990-N (e-Postcard)에 관한 안내

귀사가 Form 990-N 을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

기록에 따르면 귀사가 연례 전자 통지서 (e-Postcard) Form 990-N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

귀사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

귀사가 이미 연간 정보 보고서 (Form 990, 990-PF, 990-EZ) 즉 e-Postcard를 제출하였다면 현재는 아무런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. 매년 보고서나 e-Postcard를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.

귀사가 연간 정보 보고서나 e-Postcard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.

연간 정보 보고서 또는 e-Postcard의 제출 기한은 귀하의 과세기간 종료 후 다섯 번째 달의 15일입니다. 예를 들어 과세기간이 12월 31일에 종료되고 Form 990-N를 제출하는 경우, 제출기한은 5월 15일입니다.

누가 e-Postcard Form 990-N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?

- 민간재단/정치조직/외국업체가 아닌 면세 조직으로서 일반적으로총 수입이 50,000 달러 이하인 조직
- 섹션 509(a)(3) 해당 종교조직의 지원 조직으로서 일반적으로총 수입이 5,000 달러 이하인 조직

기타 모든 지원 조직은 총 수입액이 일반적으로 50,000 달러 이하일지라도 Forms 990 또는 990-EZ를 제출해야 합니다.

e-Postcard 제출 절차:

- 웹사이트 irs.gov/charities를 방문합니다.
- 검색 상자에 990-N을 입력합니다.
- Form 990-N의 링크를 클릭합니다.

통지번호	CP299
과세 연도	2005년 12월 31일
통지 일자	2009년 3월 2일

귀하가 연락하지 않을 경우

연간 정보 보고서 또는 e-Postcard 미제출로 인한 취소

- 귀사가 3년 연속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 번째 보고서/e-Postcard 제출 기한을 기준으로 면세 지위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.
- 귀사의 면세 지위가 취소된 후에 회복하려면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요구되는 사용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
- 귀사가 이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소급 회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
다음 단계

e-Postcard 제출 시 필요 사항

귀사의 고용주 식별 번호(EIN)를 사용해야 합니다. e-Postcard를 제출할 때 다른 조직의 EIN (예: 모기업, 그룹 지배회사, 기타 계열사의 EIN 등)을 사용하지 마십시오.

e-Postcard 제출 준비가 되면 귀사의 아래 정보를 구비하십시오.

- 법적 명칭
- 조직이 사용하는 다른 명칭
- 우편 주소
- 웹사이트 주소
- 고용주 식별 번호
- 주요 임원의 성명 및 주소
- 연간 과세 기간
- 운영 상태 (지금도 사업을 수행 중입니까?)

또한 조직의 연간 총 수입이 일반적으로 50,000 달러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 수입이 “일반적으로 50,000 달러 이하”라는 것의 의미 설명을 보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.

- 웹사이트 www.irs.gov/charities를 방문합니다.
- 검색 상자에 990-N을 입력합니다.
- Form 990-N의 링크를 클릭합니다.
- 강조표시된 텍스트 “normally \$50,000 or less”를 클릭합니다.

추가 정보

- 참고 사이트: www.irs.gov/cp299.
- 세무 양식, 지침 또는 간행물이 필요할 경우 www.irs.gov를 방문하거나 1-800-TAX-FORM (1-800-829-3676)으로 전화하십시오.
- 이 통지서는 잘 보관하십시오.
-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.